

감 사 보 고 서

- 2023년 유통센터 종합감사 -

2023. 9.

중 소 벤 처 기 업 부
감 사 관 실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 기관 현황	2
1. 일반현황	2
2. 예산현황	3
III.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4
1. 정부보조사업 인건비 집행 부적정	4
2. 홈쇼핑 지원사업 리스크 관리 부실	20
3. 홈쇼핑사업 선급금 지연이자 회수 누락 및 과오 청구	27
4. 인천공항면세점 업체 입점 등 부당 추진	32
5. 정부보조사업 예산 집행 부적정	38
6. 행복한백화점 입점 방식 등 운영 부적정	41
7. 정·현원 관리 부적정	51

7.1. 법령상 의무고용 준수 미흡	56
7.2.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미흡	59
8. 복리후생제도 운영 부적정 및 감사 지적사항 이행 미흡	66
9. 계약관리 미흡	70
10. 행복한백화점 상품권 발행 및 관리 개선 필요	74
11. 징계 관련 내부규정 정비 필요	77
12. 임직원 복무관리 개선 필요	82
13. 일상감사 미실시 등 내부통제 미흡	84
14. 상품권 구입 및 사용 관리 미흡	88
15.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 미흡	94
16. MRO 시스템 관리자 계정 관리 미흡	97
IV. 처분 요약	100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3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이라 한다)의 주기능 수행, 조직운영·복무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주기능 수행의 투명성·공정성 및 기관운영의 효율성·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유통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로 회계·계약·복무 등 기관운영 뿐만 아니라 백화점 및 면세점 운영 등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우선 실지감사에 앞서 2023년 1월 30일부터 같은 해 2월 14일까지 서면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같은 해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17일간 감사인원 9명을 투입하여 관련 서류 검토와 담당자 면담 등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 결과 확인된 사항과 관련하여 피감기관 등을 대상으로 질문·답변 과정을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23년 9월 12일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 기관 현황

1. 일반현황

가. 설립 근거 및 주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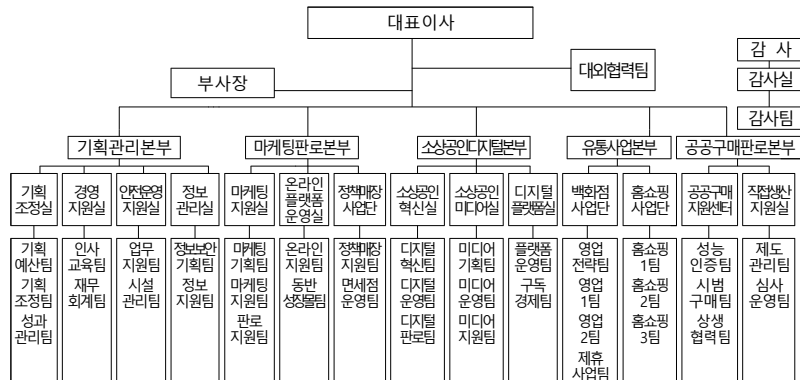
유통센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도·소매, 홍보·전시 및 전자상거래 등 중소기업 판로지원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21일 중진공 전액 출자로 설립되었다.

아울러 유통센터는 중소기업 제품의 유통망진출지원 및 공동A/S지원과 온라인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판로지원사업, 공공구매제도 및 중소기업자 간 직접생산확인 제도 운영 등 중소·소상공인의 판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조직 및 인력

2023년 3월 31일 기준 유통센터의 조직은 5본부, 11실, 3단, 1센터, 38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원은 296명이며, 현원은 284명이다.

< [그림 1] 유통센터 조직도 >



자료: 유통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2. 예산현황

유통센터의 2022년 정부재정 수입 및 자체 수입은 총 585,418백만원이며, 지출의 경우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기타(영업외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 [표 1] 중소기업유통센터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1년			'22년			
	본예산(A)	추경 등(B)	최종(C=A+B)	본예산(D)	추경 등(E)	최종(F=D+E)	
수입	□ 정부재정	107,352	-	107,352	118,570	20,200	138,770
	□ 자체수입 ¹⁾	431,374	-	431,374	446,648	-	446,648
	○ 사업수입	431,282	-	431,282	446,541	-	446,541
	○ 기타(영업외수익)	92	-	92	107	-	107
계	538,726	-	538,726	565,218	20,200	585,418	
지출	□ 인건비	3,682	-	3,682	4,006	-	4,006
	□ 경상운영비	12,821	-	12,821	14,081	-	14,081
	□ 사업비	520,736	-	520,736	543,987	20,200	564,187
	○ 재정지원사업	107,352	-	107,352	118,570	20,200	138,770
	○ 영업성경비(판촉비 등)	90,760	-	90,760	101,392	-	101,392
	○ 상품매입원가	322,624	-	322,624	324,025	-	324,025
	□ 기타(영업외비용)	1,487	-	1,487	3,144	-	3,144
계	538,726	-	538,726	565,218	20,200	585,418	

자료: 유통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1) 유통센터 2021년, 2022년 자체수입 현황(단위: 백만원)

구분	'21년	'22년
○ 고유사업 수입(매출액)	431,282	446,541
· 홈쇼핑사업	366,984	356,281
· 백화점사업	32,122	38,476
· 임대사업	7,946	9,531
· 온라인사업	18,521	27,817
· 정책매장	4,062	9,814
· 기타	1,647	4,622
○ 영업외수익	92	107
합계	431,374	446,648

Ⅲ.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Ⅲ-1 정부보조사업 인건비 집행 부적정

1. 업무 개요

유통센터는 마케팅지원사업,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사업, 공공구매제도운영, 브랜드K육성관리, MRO지원사업 등의 정부보조사업을 보조사업자로서 운영하고 있고, 백화점 사업과 홈쇼핑 사업을 기관의 고유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센터 내 부서들은 ①정부보조사업 수행 부서(이하 “정부사업부서”라 한다.), ②고유사업 수행 부서(이하 “고유사업부서”라 한다.), ③기획관리업무 수행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구분할 수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같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31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유통센터 내부규정인 「정부수탁사업 운영요령」 제7조를 보면 보조금 예산을 직접사업비와 간접사업비로 구분하고 간접사업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부와 협의하여 편성하며, 간접사업비를 인건비와 경상비로 구분하고 있다. 인건비는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로 유통센터 급여기준에 따라 정부가 승인한 예산한도 내에서 실지금액을 산정하고 경상비는 사업운영과 관련된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와 협의하여 편성해야 한다.

또한 「정부수탁사업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르면 유통센터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 참여인원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투입율, 인건비, 변경인원 등을 포함한 참여인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이번 종합감사 기간 중 유통센터의 2018년~2022년 정부보조사업비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고유사업부서 인원에 대해 정부사업 인건비를 집행한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통센터 제출 자료에 따르면 임직원 인건비는 급여,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8년~2022년 유통센터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고유사업부서 인원에 대해 5년간 총 16,116,253,509원의 인건비가 지급됐는데, 해당 인건비 중에 2,685,367,304원의 인건비가 정부보조사업비로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고유사업부서에 대한 보조사업 인건비는 마케팅지원사업, 소

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사업 2개 보조사업에서 집행됐다.

이러한 고유사업부서에 대한 정부보조사업 인건비 집행과 관련하여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마케팅지원사업과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사업의 세부추진계획, 보조금집행계획, 사업계획변경내역 등을 검토하였으나, 고유사업부서 인원을 정부보조사업에 투입하고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에 관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정부보조사업 관련 TF팀 발령 내역, ▲고유사업부서 직원이 실제 정부보조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증빙 등을 확인하여 고유사업부서 직원에 대해 집행한 정부보조사업 인건비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가. 정부보조사업 관련 TF팀 참여 고유사업부서 인원 검토

유통센터는 정부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크리스마스마켓’ 등 정부보조사업과 관련된 TF팀을 운영했는데, 고유사업부서의 인원을 이러한 정부보조사업 관련 TF팀에 겸직으로 인사발령을 내면서 정부보조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²⁾

2018년의 경우 ‘유통망진출지원 TF’에 대한 인사발령이 한차례 있었고 해당 TF의 근무기간은 2018년 8월~2018년 12월이다. 그리고 해당 인사발령에는 고유사업부서 6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유통망진출지원 TF’ 인사발령에 따라 고유사업부서 인원이 정부보조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적절히 집행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부보조사업 인건비는 190,946,572원이다.

2019년은 TF발령에 따른 고유사업부서에 대한 정부보조사업 인건비 집행내역이 없다.

2) 2018~2022년 유통센터의 정부보조사업 관련 TF팀 인사발령을 검토하여, 정부보조사업 관련 TF팀 발령에 포함된 고유사업부서 임직원에 대해 발령기간 동안 정부보조사업 인건비를 집행한 것은 그 적정성을 인정했다.

2020년의 경우 ‘O2O마켓 TF’, ‘대한민국 동행세일 TF’³⁾, ‘라이브커머스 준비 TF’, ‘디지털판로팀 TF’ 등의 정부보조사업 관련 TF 발령이 있었고, 해당 TF 발령인원에 고유사업부서 인원이 16명 포함되어 있다. TF 발령 4건에 따라 고유사업부서 인원에 대해 적절히 집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부보조사업 인건비는 523,451,204원이다.

2021년은 ‘중소기업 판로혁신지원 TF’(근무기간 2021.9월~2022.3월), ‘소상공인 O2O 융합 판매 기획전 TF’(근무기간 2021.9월~2022.1월) 등의 정부보조사업 관련 TF 발령이 있었는데, 고유사업부서 인원이 ‘중소기업 판로혁신지원 TF’에 1명, ‘소상공인 O2O 융합 판매 기획전 TF’에 1명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고유사업부서 인원을 정부보조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적절히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부보조사업 인건비는 62,064,337원이다.

2022년의 경우는 ‘대한민국 동행세일TF’, ‘크리스마스마켓 TF’ 인사발령에 따라 고유사업부서 인원에 대해 정부보조사업 인건비가 집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대한민국 동행세일TF’는 근무기간이 2022년 3월~2022년 7월이고, 해당 TF 발령에 따라 정부보조사업 인건비가 집행된 고유사업부서 인원은 1명이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마켓 TF’의 경우 근무기간이 2022년 10월~2022년 12월로, 해당 TF 발령에 따라 정부보조사업 인건비가 집행된 고유사업부서 인원은 13명이다. 이러한 TF 인사발령에 고유사업부서 인원이 정부보조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할 수 있는 고유사업부서 인원에 대한 정부보조사업 인건비는 302,829,070원이다.

3) 대한민국 동행세일 TF는 TF 겸직 발령만 있고 별도 TF 면직 발령이 없어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종료(7월)까지를 근무기간으로 산정

나. 고유사업부서 임직원의 실제 정부보조사업 수행 내역을 검토

위의 정부보조사업 관련 TF팀 발령 내역이 있는 임직원 외에도 정부보조사업 인건비가 집행된 고유사업부서 임직원에 대해서 실제 정부보조사업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있는지를 기안문, 이메일 등의 증빙을 통해 검토하였다.⁴⁾

2018년은 위의 정부보조사업 관련 TF팀 발령에 따른 고유사업부서에 대한 정부보조사업 인건비 집행 내역 외 별도의 집행 내역은 없었다.

2019년 정부보조사업 인건비가 지급된 고유사업부서 직원의 정부보조사업 업무 수행 여부를 기안문, 이메일 등의 증빙을 통해 점검한 결과, 18명의 직원이 정부보조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정부보조사업 인건비는 총 120,107,883원이다.

2020년 정부보조사업 인건비가 지급된 고유사업부서 직원의 정부보조사업 업무 수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6명의 직원이 정부보조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정부보조사업 인건비는 총 614,172,142원이다.

2021년 정부보조사업 인건비가 지급된 고유사업부서 직원의 정부보조사업 업무 수행 여부를 점검했는데 5명의 직원이 정부보조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정부보조사업 인건비는 총 102,696,906원이다.

2022년 정부보조사업 인건비가 지급된 고유사업부서 직원의 정부보조사업

업무 수행 여부를 점검했는데 11명의 직원이 정부보조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정부보조사업 인건비는 총 288,022,398원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2018년~2022년까지 유통센터가 고유사업부서 인원에 대해 집행한 정부보조사업 인건비 2,685,367,304원 중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TF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금액 1,079,291,183원, 실제 업무수행 증빙으로 확인한 집행금액 1,250,346,475원으로 나머지 355,729,646원에 대해서는 집행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관계기관 의견】

유통센터는 인건비 참여인력 명단 등 상세내역에 대한 행정 절차 운영이 미흡하였던 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해 관리지침 마련, 시스템 체계 수립 등의 개선 조치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① 유통센터 고유사업부서 임직원의 부적정하게 집행된 정부보조사업 인건비 355,729,646원을 국고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② 향후 정부보조사업 수행 시 별도의 집행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정부보조사업비 집행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보조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기관경고)

4) 실제 정부보조사업 관련 업무 수행 증빙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적정 수준의 정부보조사업 참여율을 산정할 수 없어, 1건의 정부보조사업 관련 업무 수행 증빙이라도 확인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집행된 정부보조사업 인건비 전체에 대해 적정성을 인정했다.

1. 업무 개요

유통센터는 「사업관리규정」, 「방송판매사업운영요령」 등에 따라 TV홈쇼핑(채널사업자) 방송 판매대행 사업(이하 ‘홈쇼핑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통센터는 홈쇼핑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에 따른 손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방송판매사업운영요령」⁵⁾과 유통센터와 거래 기업 간에 체결하는 “거래 약정서⁶⁾”를 근거로 이행보증보험⁷⁾을 수취하거나, 결제대금의 일부 유보⁸⁾를 통해 해당 상품의 반품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고 있다.

- 5) 제12조(대금지급) ③ 거래종료 시에는 반품 등에 대비하여 해당 월 업체 ‘대금현황’을 기준으로 매출상품대 금액의 10%이상 유보하여야 하며, 정기대금 지급일 기준 1개월 후,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금액에 대하여 부서장의 결제를 득한 후 지급할 수 있다.
- 6) 「거래약정서」 제12조(대금지급) ③ 거래종료 시에는 반품 등에 대비하여 해당 월 업체 ‘대금현황’을 기준으로 매출상품대 금액의 10%이상 유보하여야 하며, 정기대금 지급일 기준 1개월 후,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금액에 대하여 부서장의 결제를 득한 후 지급할 수 있다.
- 「기본거래계약서」 제17조 ② “유통센터”는 관련 법령 등에서 가입이 의무화되거나, 상품의 특성상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력사”에 대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기타 보험의 가입을 요청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라 “협력사”가 상기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협력사”는 가입을 증빙하기 위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또는 제조물책임보험증권 등을 “유통센터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7) 이행보증보험은 납품 기업에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입점보증보험(주로 3천만원, 1천만원, 5백만원), 선금보증보험(주로 선금금 지급액 수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입점보증보험은 홈쇼핑에 입점하는 신규 협력사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홈쇼핑 방송 판매 후 반품 등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보증보험이다. 그리고 선금보증보험은 협력사에 선금금을 지원했을 때 자금 회수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보증보험이다.
- 8) 결제대금유보의 경우 ▲거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협력사에 대해 전환율 등에 따라 결제대금 지급을 유예하는 형태와 ▲유통센터 내부지침인 「방송판매사업운영요령」에 따라 거래 종료 이후 결제대금의 10%이상을 유보하는 형태(방송 판매가 종료된 시점의 해당월 결제대금 중 10%의 지급을 유보하고, 그 유보금에서 하자 해소에 소요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가 있다.

한편, 유통센터는 홈쇼핑 사업을 통해 ㈜○○의 “○○○○ 참기름”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홈쇼핑에 판매하였다.

위의 [표 23]에서와 같이 유통센터를 통해 ㈜공영홈쇼핑으로 ㈜○○의 국산 참기름(이하 “가짜참기름”이라 한다.)이 납품·방송되었고, 해당 상품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방송판매 또는 제휴판매를 통해 약 25억원(구매고객 수 37,559명)이 판매되었다.

하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점검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것을 적발하여 2021년 12월 9일 ㈜○○의 실질적 대표 등을 형사고발하였고, 2022년 12월 8일 최종적으로 원산지표시위반 등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에 대한 형사적 조치 외에, ㈜공영홈쇼핑은 이 사건이 최초로 언론보도 된 2021년 12월 9일 이후, 환급을 요청한 고객(411명, 34백만원)을 대상으로 우선 환불 조치를 실시하였고, 청주지방법원 1심 판결 이후인 2022년 9월 27일 구매고객 전체(16,135명, 11.4억원)에 대한 환불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영홈쇼핑은 2023년 3월 14일 환불금 1,245,199,582원에 대해서 유통센터와 ㈜○○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유통센터 「복무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직원은 유통센터의 사명을 항상 명심하여 공사를 분별하며, 봉사하는 마음가짐과 겸허한 자세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규정 제8조에 따르면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유통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유통센터는 2021년 12월 9일 (주)○○◆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에 대한 언론보도로 이 사건을 최초 인지한 후, 다음날인 10일 (주)○○◆의 본사 및 공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및 설비 자산 보유 등을 확인하였고, 당시 (주)○○◆의 본사 사무실은 폐쇄되어 있고, 공장은 화재⁹⁾로 인해 생산 설비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유통센터는 당시 (주)○○◆의 손해배상 책임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2021년 12월 13일 (주)○○◆의 2개 생산공장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음에도, (주)○○◆에 대하여 향후 발생할 구상금 채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유통센터는 (주)○○◆에 내용증명¹⁰⁾을 보내고, 일부 금액에 대한 환입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주)○○◆의 판매금액(25억원)과 실제 구상채무액(12억원, 예상)을 고려할 때, 매우 소극적인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통센터는 2022년 7월경 범무법인에 피해 금액 회수와 관련 법률자문을 받는 등 (주)○○◆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통센터의 이러한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주)○○◆ 소유인 토지 및 건물에

9) 2021년 5월 31일 (주)○○◆ 공장 화재로 인해 생산설비 전소

10) 2021년 12월 23일 유통센터는 ○○○ 대표에게 상품 판매책임과 피해 손실 배상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해 ○○○는 2021년 12월 28일 (주)○○◆의 실질적인 대표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인 ○○○★이며, ○○○★을 구치소 수감 중으로 본인은 가짜참가름 사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회신하였다.

대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하였고, 향후 유통센터는 (주)공영홈쇼핑의 구상금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유통센터는 (주)공영홈쇼핑과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최종손해액 확정 시 (주)○○◆에 대한 별도의 구상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원인 제공자인 (주)○○◆에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주장하나, (주)공영홈쇼핑과 민사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고, 그 소송 확정 후 (주)○○◆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주)○○◆의 책임 재산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실익이 없는 비용 지출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기관 의견】

유통센터는 거래 상대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건 관련하여, 불법행위자인 (주)○○◆과 피고인 등의 형사절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의 파악, 손해배상 최고, 손해보전을 위한 환입 등의 조치들을 하였으나 책임재산을 위한 확보 노력 등에서 결과적으로 미흡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하면서,

추후 유통센터는 궁극적으로 원산지표시법 위반 행위자로 배상의무가 있다고 여겨지는 법인과 개인들에 대한 구상 및 재산 탐색과 환수를 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시스템 및 규정 보완을 통해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 ① 홈쇼핑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

기 위해 내부 임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근거와 구체적 집행기준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기관주의)

② (주)○○◆과 관련하여 발생한 리스크에 대해 사후조치를 부적절하게 한 관련자를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 ☆☆☆ (개인주의)

III-3

홈쇼핑사업 선급금 지연이자 회수 누락 및 과오 청구

1. 업무 개요

유통센터는 「선급금 및 담보관리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소상공인(이하 “업체”라고 한다.)의 홈쇼핑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체로부터 재화를 제공받기 전 해당 업체가 원재료를 매입하여 재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선급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유통센터 「선급금 및 담보관리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업체가 선급금 상환을 지체할 때에는 연 10%의 지연이자를 부과·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복무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직원은 유통센터의 사명을 항상 명심하여 공사를 분별하며, 봉사하는 마음가짐과 겸허한 자세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유통센터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주)★△○○○○○○○○○○ 등 314개 업체에 총 61,239,900,000원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 중 301개 업체로부터 58,768,293,000원(96.0%)을 회수하였다.

유통센터 「복무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업체가 선급금 상환을 지체할 때에는 이에 대한 지연이자(연

10%)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신속히 청구·회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유통센터는 ☎♥♣♠♦(주) 등 2개 업체가 총 72,424,148원에 대한 선급금을 지체하여 상환하였는데도 해당 업체에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은 채 최장 29개월여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유통센터는 (주)☒♦♣♠♣☎☎ 등 5개 업체의 경우 14,388,285원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여야 하는데도 이보다 540,587원 많은 14,928,872원을 청구하는가 하면, (주)☎☎☎♣♠♠♦ 등 12개 업체의 경우에는 26,339,671원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여야 하는데도 이보다 2,552,275원 적은 23,787,396원을 청구하는 등 총 17개 업체에 지연이자를 과오 청구하여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위 과오 청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유통센터는 매년 약 100개 업체에 230억 원가량의 선급금을 지급하는 바, 이에 대한 변동사항(지급·상환 등)이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업무담당자 개개인이 위 변동사항을 엑셀 파일에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업무 전반에 대한 취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문제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급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있어 지연이자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를 잘못 청구하여 행정의 신뢰성이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유통센터는 앞으로 업체가 선급금 상환을 지체하는 경우 신속히 지연이자를 청구·회수하고, 지연이자 정산 시에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

저히 하며, 선급금에 대한 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업무를 개선하여 위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① 선급금에 대한 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업무를 개선하여 위와 같은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② 앞으로 선급금 지연이자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선급금 지연이자 산출 오류로 인해 추가환급 및 회수가 필요한 금액에 대하여 신속히 환급 및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③ 지연이자 회수업무를 2회 이상 소홀히 한 업무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b, ▼\$※, ♠♣♠, ☑♠★, ☎☎♣ (주의)

1. 업무 개요

유통센터는 “마케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전시, 홍보, 판매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내외 소비자 반응을 살피고, 이를 마케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부터 인천항면세점(이하 “면세점”이라 한다.) 丙 “중소전용판매장”(정책매장)을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등에 따르면 정책매장에 업체를 입점시킬 때에는 매장별 입점 가능 업체 수를 감안하여 상품선정위원회(이하 “1차 평가”라고 한다.) 평가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여 입점심의위원회(이하 “2차 평가”라고 한다.)에 부의하되, 면세점 외 정책매장(행복한백화점 등, 이하 “타 정책매장”이라 한다.)에 기(既)입점한 업체이거나 브랜드K에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점 입점 1차 평가를 면제하고 2차 평가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유통센터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입점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주)○○○★●●● 등 460개 업체를 입점시키고, 이 중 매출실적이 부진한 (주)○○○●●● 등 52개 업체를 자체 심의 후 퇴점 조치하였다.

유통센터는 「관리지침」 등에 따라 면세점 입점 1차 평가를 면제할 때에는 정책매장에 기 입점한 업체이거나 브랜드K 선정제품에 한하여 면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유통센터는 면세점 입점 신청 업체(1,290개) 중 378개(29.3%) 업체 제품에 대하여 1차 평가를 면제시켜 주었는데, 이 중 364개 업체는 타 정책매장에 기입점한 업체 이거나 브랜드K에 선정된 제품으로 정당하게 면제시켜 준 반면 (주)○○○●●● 등 나머지 14개 업체는 정책매장에 기입점한 사실이 없고, 브랜드K에 선정된 제품이 아닌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평가를 면제시켜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타 정책매장 기(既) 입점으로 평가 면제한 296개 업체 중 (주)○○○●●● 등 10개 업체는 타 정책매장에 기 입점한 사실이 없었고, 브랜드K 선정제품으로 평가 면제한 82개 업체 중 (주)○○○★●●● 등 4개 업체는 아래 사례와 같이 브랜드K 선정제품이 아닌데도 1차 평가를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일부 업체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면세점에 입점하여 동 사업 전반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유통센터는 앞으로 면세점 입·퇴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매 분기 퇴점 심의를 진행하는 등 면세점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관계자 의견】

○●●●은 2021년 9월경 면세점 입점 신청서를 접수·취합한 후 제품 카테고리

리별(식품, 화장품 등) 담당자를 정하여 각 담당자가 평가면제업체를 선별하면 본인(☑≡⊙)이 이를 최종 취합하여 평가면제업체를 확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평가면제업체 선별 방식은 기존 엑셀 파일에 관리하고 있던 “타 정책매장 입점 업체 리스트” 내 면세점 입점신청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평가를 면제시켜 주었다고 하면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리스트 내 타 정책매장 미 입점 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등 일부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답변하였다.¹¹⁾

이와 관련하여 ☑≡⊙을 포함한 업무관련자들은 평가면제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관관대로스시스템”(정책매장 입점 업체 관리시스템)에 타 정책매장에 입점한 업체인지를 조회해보는 등 꼼꼼히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당시 촉박한 일정¹²⁾ 가운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홀히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업무 처리 시에는 위와 같이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면세점 입점 관련 평가면제업체를 선정하면서, 검토를 소홀히한 ☑≡⊙ 및 ☑㉸☞ 주임에 대해서는 주의, 검토 및 최종 취합 후 재검토를 소홀히한 ☑≡⊙ 대리에게는 경고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 (주의) ☑≡⊙ (경고)

11) 유통센터는 “당시 리스트를 작성한 업무담당자가 ’22. 3. 14. 퇴사하여 리스트에 정책매장 미입점 업체가 들어간 경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어렵지만 백화점 단기행사(평가 없이 참여 가능) 등에 참여한 업체 중 일부가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답변
 12) 면세점 입점 모집공고(’21.8월) → 1차 평가(’21.9월) → 2차 평가(’21.10월) → 최종입점(’21.11월)

III-5

정부보조금사업 예산 집행 부적정

1. 업무 개요

유통센터는 「회계규정」, 「예산관리규정」, 「정부수탁사업 운영요령」 등에 따라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로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유통망진출지원’ 등의 내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르면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연장된 사업기간 내에만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유통센터 「회계규정」 및 「예산관리규정」은 유통센터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으며, 「예산관리규정」 제16조 제1항¹³⁾에 따르면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정부수탁사업 운영요령」 제12조 제3항에서도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유통센터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 관련 공지사항 등을 보조사업 수혜자

13) 「예산관리규정」 제16항 ①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조 또는 구매중에 있는 자본예산과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등에게 MMS 서비스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발송하고 있고 ‘소상공인온라인판로 지원’ 사업의 경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송금액을 보조금으로 사전에 MMS 서비스(▲☎14), ▲☎X▲☎ 등에 충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MMS 서비스(▲☎) 및 ▲☎X▲☎의 충전·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충전한 금액을 당해 사업기간에 사용하지 않고 다음 사업기간에 사용한 사례가 7건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유통센터는 예산처리 방법에 대한 인지 및 이월에 대한 업무처리가 미흡하여 ▲☎ 및 ▲☎X▲☎ 충전한 금액 일부 잔여 발생 사실 있었다고 하며, 향후 업무수행에 있어 주의하여 연내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게 지출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① 정부보조사업의 사업비를 사업기간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이월 사업 실태과약 등 보조금 집행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② 보조사업비 집행 관리를 소홀히 하여 충전금액 대부분을 이월하게 한 업무담당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주의)

14) <https://www.ppurio.com/>(문자발송 위탁업체)

III-6

행복한백화점 입점 방식 등 운영 부적정

1. 업무 개요

유통센터는 민간 대형 유통망으로부터 소외받는 중소·소상공인 등에게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적 채널과 연계하여 중소·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99년 12월부터 행복한백화점(서울 목동 소재, 이하 “백화점”이라 한다.)을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다.

백화점 매장 유형은 “정책매장”과 “일반매장”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일반매장”(수수료매장) 입점 절차는 유통센터 직원(MD: Merchandiser)이 업체를 추천하면 이를 입점승인위원회에 부의·심의하고 대표이사가 최종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 공통사항 >

유통센터 「복무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직원은 유통센터의 사명을 항상 명심하여 공사를 분별하며, 봉사하는 마음가짐과 겸허한 자세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 백화점 입점 관련 >

「백화점사업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매장 입점 관련 정기 및 수시입점승인위원회(이하 “승인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할 때에는 평가위원을 내부직원(정기: 11인, 수시: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

고, 같은 요령 제7조 제3항 등에 따르면 백화점 입점대상 업체는 담당 MD가 입점 제안한 업체 및 신청 업체 등을 승인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위원회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 업체 중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를 입점대상으로 선정하되,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가 입점을 포기할 경우 차점(차순위) 업체를 입점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백화점 VIP 고객 및 임직원할인 관련 >

「운영요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백화점 VIP카드(이하 “할인카드”라고 한다.)는 백화점 내 상품 구매 시 할인(구매금액의 최대 10%)을 적용하는 카드를 말하며, 할인카드는 연간 구매실적이 800만 원 이상(‘23년부터 500만 원 이상으로 금액 조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운영요령」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임직원 할인카드(이하 “할인카드”라고 한다.)는 유통센터 임직원 및 자회사(SBDC파트너스) 직원이 백화점 내 상품 구매 시 할인을 적용하는 카드를 말하며, 할인카드는 재직 중 직원이거나 퇴사한 직원의 경우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백화점 입점에 대한 공정성 등 부족

유통센터는 총 191개 매장 중 정책매장 1개를 제외한 190개 매장 모두 일반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매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시로 승인위원회를 거쳐 입점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유통센터 「복무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백화점 입점대상 업체를 승인위원회에 부의시킬 때에는 다수 업체로부

터 입점신청을 접수받아 객관적 기준에 따라 부의시켜야 하고, 승인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유통센터는 백화점 내 공실이 발생하면 모집공고를 통해 입점 업체를 선정하는 “정책매장”과 달리 “일반매장”의 경우 모집광고 등의 절차 없이 유통센터 직원(MD)이 업체를 자체 발굴하여 이를 입점대상 업체로 추천하면 전원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승인위원회를 거쳐 입점 업체를 선정하는 등 백화점 입점 전반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 훼손이 우려되었다.

이에 “일반매장” 입점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백화점 내 총 36개 일반매장 공실이 발생하였는데, 유통센터는 공실 수와 동일한 36개 업체를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자체 발굴하고 이를 승인위원회에 그대로 부의하여 위 업체 모두를 입점¹⁵⁾시키는 등 “일반매장” 입점에 대한 공정성이 부족한 실정이었다.¹⁶⁾

게다가 입점이 승인된 위 36개 업체 중 ♣♠♥♣♠ 등 3개 업체가 입점을 자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 「운영요령」에 따라 승인위원회 차순위 업체를 입점시켜야 하는데도 현(現)운영방식¹⁷⁾상 차순위 업체가 부재하여 일부 매장 운영에 차질¹⁸⁾ 또한 발생하고 있었다.

그 결과 공정성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화점 입점 절차를 진행하여 백화점 입점 참여 기회가 기존 유통센터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 등으로 제한되었

15) 다만, 승인위원회 심의 결과 위 36개 업체 모두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자체 입점 기준에는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

16) 유통센터는 직원(MD)이 업체 방문·유선연락 등을 통해 일반매장 입점대상 업체를 발굴하였다고 답변 다만, 업체 방문 및 유선연락 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 등은 직원 개개인이 입점대상 업체를 자체 발굴하여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렵다고 답변

17) 공실 수(36개)와 동일한 수의 업체(36개)를 승인위원회에 부의하여 차순위 업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임

18) 유통센터는 업체가 입점을 자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 부재로 다음번 승인위원회 개최 시까지 공실매장을 단기 행사 매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

을 뿐만 아니라 업체가 입점을 자진 포기하여 일부 매장이 단기행사 매장으로 활용되는 등 백화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나. 백화점 VIP 및 임직원 할인대상자 선정 등 부적정

유통센터는 「운영요령」에 따라 백화점 VIP 고객¹⁹⁾ 및 임직원²⁰⁾을 대상으로 백화점 할인카드를 발급하여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905,744,000원²¹⁾(유통센터가 부담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할인 및 감사품(백화점 내 매장 상품권) 등을 제공하였다.

유통센터 「운영요령」에 따르면 VIP 고객은 백화점 직전년도 구매실적(이하 “구매실적”이라 한다.)이 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임직원(자회사 포함)은 재직 중이거나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직원인 경우에 한하여 백화점 할인카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기준에 미달되는 고객 및 직원에게 할인카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유통센터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186명을 VIP 고객으로 선정하고 할인카드를 발급하였는데, 이 중 579명(48.8%)은 구매실적이 800만 원 이상으로 할인카드를 정당하게 발급한 반면, 나머지 607명(51.2%)은 구매실적이 500만원 이상 800만 원 미만으로 VIP 대상이 아닌데도 대표이사 방침²²⁾(구매실적 기준을 완화 800만 원→5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위 규정²³⁾을

19) ('20년 ~ '22년) 직전년도 구매실적 800만 원 이상, ('23년 이후) 직전년도 구매실적 500만 원 이상

20) 유통센터 및 SBDC파트너스(자회사) 임직원

21) 라운지 운영비, 연말행사 등 VIP 고객별 금액 환산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함.

22) 유통센터는 「2020년도 백화점 VIP 구매실적 운영계획안」(직전년도 구매실적 500만 원 이상)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결재(20. 2. 25.)를 득하였는데, 위 보고 당시에는 「운영요령」의 VIP 구매실적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2022년 조경이 되어서야 위 기준을 인지하여 같은 해 3월경 집행위원회를 거쳐 「운영요령」상 VIP 기준을 기존 8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2023년도부터는 개정된 기준으로 VIP 고객을 선정·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

23) 「백화점사업운영요령」(14. 4. 4., 제정)

무시한 채 부당하게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백화점 할인 및 무료주차 등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위 607명에 대해 백화점 할인 등 혜택 부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유통센터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위 인원에 대해 백화점 할인으로 153,692,000원을, 감사품으로 10,350,000원을 제공하는 등 총 164,042,000원의 혜택을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롯하여 유통센터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직원 할인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총 929명을 임직원 할인대상자로 선정하고 할인카드를 발급하였는데, 이 중 891명(95.9%)은 재직 중이거나 1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하여 「운영요령」에 따라 정당하게 할인카드를 발급한 반면, 나머지 38명(4.1%)은 10년 미만 근속 후 퇴직하여 직원 할인이 대상이 아닌데도 「운영요령」의 직원 할인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위 38명에 대해 「운영요령」상 자격이 박탈된 시점 이후 백화점 할인을 받았는지 확인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명(13.2%)이 백화점을 이용하고 총 516,990원의 할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유통센터는 위 기간 동안 「운영요령」에 따른 정당 할인(감사품 포함) 금액인 741,186,000원보다 많은 905,744,000원의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 최대 164,558,000원의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유통센터는 앞으로 백화점 內 “일반매장” 입점 시 입점대상 업체를 공개모집함과 아울러 승인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시키는 등 백화점 운영의 공정성,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VIP 고객 선정 등 업무 처리 시에는 상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며, 백화점 할인 등 자격 기준이 미달되는 인원(퇴사자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① 전문성있는 외부위원풀(pool)을 구성하여 백화점 일반매장 입점 시 승인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시키고, 입점대상 업체를 공개모집(수시모집 등)함과 아울러 공개모집에 대한 업체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백화점 운영의 공정성, 객관성, 효율성 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② 앞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백화점 할인대상자를 선정하는 일 등이 없도록 하고, 백화점 할인 등 자격이 없는 인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자격을 박탈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III-7 정·현원 관리 부적정

1. 업무 개요

유통센터는 「직제규정」, 「직제규정시행요령」, 「인사규정」, 「근무평정요령」 등에 따라 총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하여 직원의 승진, 직무대리 등 기관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르면 임직원의 선임·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제6조의2에 따라 증원의 절차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따라서 유통센터는 직급별 정원 및 현원을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기능 및 업무량 등에 맞춰 균형있게 조정하고 특정 직급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정원과 현원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유통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수시증원 요구 및 검토 등 매년 정원 관련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직제규정」의 정원표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

감사대상 기간(2020년 1월~2022년 12월) 중 유통센터 정규직의 정·현원 현황을

검토한 결과, 1급 부장, 3급 차장, 4급 과장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 전체기간에 정원 대비 현원이 계속하여 부족한 정·현원 불일치 상태였다.

2급 부장은 2020년 1월~2021년 12월에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했고, 2022년 1월~3월에 정원보다 현원이 1명 더 많아 2020년 1월~2022년 3월은 정·현원 불일치한 상태였다가 2022년 4월 이후로는 정·현원이 일치한 상태를 유지했다.

5급 대리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 중 2020년 1월~2021년 6월, 2021년 12월~2022년 1월, 2022년 4월~2022년 6월에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했고, 나머지 기간은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아 감사대상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정·현원 불일치한 상태였다.

6급 주임은 감사대상 기간 중 2022년 7월에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했고 나머지 기간은 계속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아 감사대상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정·현원 불일치한 상태였다.

7~8급 사원은 감사대상 기간 중 2020년 5월, 2020 8월~2020년 12월, 2021년 3월~2021년 5월에 정·현원이 일치했고 나머지 기간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거나 많은 정·현원 불일치한 상태였다.

【관계기관 의견】

유통센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11명(현 정원의 72%)에 달하는 인력 채용을 실시하는 등 기관의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매진하였으며,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 162명(현 정원의 56%)에 달하는 승진인사를 진행하면서 기관의 직급별 필요인력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높은 직급일수

를 승진하기 위해서는 기관성과를 달성하는 개인 역량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한바 높은 직급 승진은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 정원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향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정원과 현원 관리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특정 직급의 정원 및 현원에 과도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급별 정원·현원 차이를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 업무 개요

유통센터는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직원의 채용을 운용하고 있다. 2022.12월 상시근로자 286명 조직으로서 법령상 고용준수의무를 준수하며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내지 제28조의2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50명 이상 사업주, 공공기관 등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3조의2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업종에 따라 전체고용인원의 3~8% 범위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고용이 필요하며, 유통센터의 경우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며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5% 의무를 지닌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이번 종합감사 기간 내 유통센터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유통센터는 5년 연속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27,863천원 이다.

또한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의무고용비율 5년 연속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법정인원 대비 취업인원 비율은 5년간 평균 67%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은 없는 상태이다.

【관계기관 의견】

유통센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 10명(중증장애인 1명 포함) 및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보훈) 5명을 채용하였으며, 특히 모든 장애인·보훈 채용인력을 100%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취업기회 확대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왔으나, 채용인력의 지속적인 퇴직 등으로 인해 고용달성이 미비하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며 향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국가보훈처 등 관련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법령상 의무고용 준수를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앞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 업무 개요

유통센터는 업무수행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전문성 또는 한시성을 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당 또는 일당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기한부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유통센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방안(2019.12.4., 관계부처 합동)」 및 내부규정 「업무지원직 근로자 관리운영 지침」 제11장에 근거하여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승인할 수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승인 받은 업무에 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유통센터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196건(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검토한 결과 파견직 채용 163명(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절차를 생략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의 파견근로자 채용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이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기간제법·파견법 상 차별 처우금지 등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및

운영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유통센터는 계약직 및 단기일자리 등 기관 소속으로 직접 고용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모두 절차를 준수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운영하였으나, 파견 등 소속 외 인력에 대한 사전심사 적용여부는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빈번한 수시채용이 필요한 파견인력 특성 및 정책사업 수행지원·신속한 인력 배치 등 기관 성과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에 대해서는 일부 참작이 필요하며, 앞으로는 비정규직 채용 시 관련 지침과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향후 비정규직 채용시 채용사전심사제 운영 등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 업무 개요

유통센터는 「임직원복지규정」, 「임직원복지규정시행요령」 등에 따라 임직원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혁신지침”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임직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고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운영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를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또한 「혁신지침」 제4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임직원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고, 창립기념일 등 각종 기념일에 고가의 기념품 또는 현금성 물품을 지급할 수 없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건강검진

유통센터는 「임직원복지규정」 제4조에 따라 연 1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임원은 40만원, 만35세 이상 직원은 20만원(이하는 70천 원)을 지원한다. 감사대상기간(2020년 1월~2022년 12월) 건강검진 수검률은 99% 이상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3항에 따르면 건강검진의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통센터는 검진을 지원하는데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따른 구분이 아닌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고, 1년에 1회 모든 임직원에 대해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검진비 지원은 지난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도 ‘복리후생제도 운영 부적정’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처분을 통보받은 바 있다. 처분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가 필요하여 유통센터는 이를 2022년 노동조합 단체협약 시 제도개선 사항을 회사요구안에 포함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노조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나. 기념일 선물

유통센터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10만원 상당의 기념품(선물)을 ▲창립기념일, ▲설명절, ▲근로자의날, ▲추석명절, ▲생일 총 다섯 차례 지급하고 있다. 이 중에 생일의 경우 영화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현금성 물품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혁신지침」 제37조 및 제41조에 맞지 않다.

【관계기관 의견】

유통센터는 건강검진에 대하여 지난 종합감사에서 개선하도록 처분 받은 바 있어 2020년과 2022년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노조와 지속적으로 규정 개정을 시도

하였으나, 협상 난항으로 규정 개정을 완결 짓지는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향후에도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기념일 선물에 대해서는 현행 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맞지 않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개선·노력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①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제도 운영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②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기념일 선물 등 관련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 업무 개요

유통센터는 공사, 구매, 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및 「계약업무 매뉴얼」을 제정하고, 계약사무처리요령 및 계약업무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① 「계약업무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르면 용역수행기간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의 대가는 결과보고에 대한 검수·검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 “적정”통보를 한 이후, 계약상대자로 부터 대금청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대가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채권 확보조치를 위해 선금이행보증증권 필수적으로 발급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완료계 접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미이행 및 계약대금 지급 지연

감사 대상기간(2020.1.1.~ 2022.12.31.) 중 유통센터 소속 부서에서 계약 체결이 되어 집행된 계약건을 검토한 결과 14건의 계약에서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여 결과보고서를 접수하였으나 지체상금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 13건, ▲결과물에 대한 검수결과 통보 후 업체의 대금요청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한 사례 14건, ▲업체의 대금청구 요청 이후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초과하여 지급한 사례 1건이 확인되었다.

나. 선금이행보증증권 미발급

유통센터는 「계약업무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계약의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채권확보를 위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보험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 지급일 이전,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의 증권을 필수로 징구받아 선급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금이행보증증권을 발급 및 징구받지 않고 선금을 지급한 계약이 2건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유통센터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 계약업무매뉴얼 개정 및 전직원 계약교육을 할 예정에 있으며, 향후 계약관리 효율화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계약체결시까지 아닌 대금지급시 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고도화 하여 각 사업

담당자들이 직접 입력하고 계약부서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 ① 계약 업무 추진 시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 매뉴얼」 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② 지체상금 미이행, 대금지급 지연, 선금이행보증증권 미발급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주의)

1. 업무 개요

유통센터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행복한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고객 서비스 증진과 판촉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복한 백화점상품권을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2019.5.15.개정)」 제3조(정보제공) 제2항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는 시각장애인이 동 약관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 사항에 대하여 점자 표기, QR코드 표시 등 그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유통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정보제공)을 준용하는 내부규정 상품권취급요령 제9조(중요사항의 상품권면 기재) 제3항을 개정·시행(2021.6.14.)하였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QR코드 미적용, 상품권 관리 개선필요

유통센터는 2021년 6월 14일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백화점상품권 3,713매(5천원권 600매, 1만원권 275매, 5만원권 2,491매, 10만원권 347매)를 발행하였다.

내부규정에 따라 발행 당시 점자표기, QR코드 표시 등 시각장애인이 상품권면에 중요사항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기입하여 발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고, 발행일을 상품권이 실제 고객에게 판매(교부)된 날짜로 해야 한다. 따라서 상품권 상의 발행일은 상품권 판매 시 판매된 날짜를 표기하여야 함에도 유통센터는 상품권을 제작하면서 제작하는 날짜를 발행일로 포함하여 제작하고 있어 상품권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에 대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나. 상품권 관리에 대한 물리적 보안 미흡

유통센터에서 발행된 상품권 관리 현황을 검토한 결과 상품권은 재무회계팀 사무공간 내 금고에서 입고 및 불출하고 있다. 상품권 보관 금고의 위치(공간)는 보안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용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외부인의 침입을 감시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보안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발행된 상품권에 대한 접근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며, 상품권 도난 등이 발생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에대해 상품권 보관(이중 시건장치) 및 시설보안 관리(CCTV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유통센터는 시각장애인의 중요정보 사항에 대하여 점자표기 또는 QR코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행복한백화점 상품권 디자인 등을 변경하겠다고 하며, 상품권 발행일을 고객에게 판매된 날짜로 표기하고 상품권 보관과 관련하여 보안

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중요정보를 행복한백화점 상품권 지면에 포함하도록 하고 상품권의 발행일을 제작일이 아닌 실제 판매일로 기재하도록 하며, 상품권 보관과 관련된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통보)

III-11 징계 관련 내부규정 정비 필요

1. 업무 개요

유통센터는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직원에 대한 인사·징계업무를 처리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5조에 보면 기타공공기관은 임용, 복무, 징계 등 인사 관리와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43조, 제44조의2 및 제7장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경영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인사·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 관련 내부규정(승진·포상제한,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같은법 제23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법 제2조에 따를 때 유통센터의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유통센터의 「인사규정」, 「고발지침」 등을 검토한 결과 「경영지침」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규정을 두도록 한 사항 및 「청탁금지법」 등의 내용이 유통센터 내부규정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가. 징계처분 관련 승진제한

「인사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직원에 대한 승진 제한을 징직·감봉은 1년, 과거 1년간 근신 1회 이상은 6개월(채용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3개월을 더한기간)로 규정하고 있어 「경영지침」 제22조에 따른 징계처분 관련 승진제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나. 징계처분 관련 포상제한

유통센터는 「인사규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직원 포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등에 대한 포상 제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경영지침」 제25조(24)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근거

「인사규정」 「별표5」징계양정기준'을 보면 유통센터는 징계의 종류를 ▲부정한 행위,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 ▲유통센터의 명예손상, ▲유통센터 내 기강문란 행위, ▲유통센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행위, ▲직무수행능력 및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불량할 때, ▲관리자로서 관리·감독 소홀로 규정하고 있어 「경영지침」 제26조 제2항에 따른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근거가 누락되어 있다.

라. 중징계 처분 직원 등에 대해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 24) 「경영지침」 제25조(포상 제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1.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사람
 2. 징계절차 진행 중인 사람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재직 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4. 수사 중이거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감사 진행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유통센터는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인사규정」, 「성과평가 운영지침」 등의 규정이 있으나, 해당 규정에는 「경영지침」 제26조 제7항(25)에 따른 중징계 처분 직원 등에 대한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 임용(채용)결격사유에 성범죄 포함

「인사규정」 제15조 제11호에 보면 성범죄와 관련한 임용(채용)결격사유로 「형법」 제303조(26)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27)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경영지침」 제26조 제9항은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의 임용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임용결격사유(28)를 보면 유통센터 「인사규정」보다 엄격하게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유통센터 「인사규정」이

- 25) 「경영지침」 제26조(징계 등 복무관리) ⑦공기업·준정부기관은 성과평가 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성과평가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의 징계시효가 5년인 행위
 2. 제29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 26)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8)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영지침」에 따른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사유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 징계시효

「인사규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경영지침」 공공기관에 성매매·성폭력·성매매에 대해 징계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도록 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 「고발지침」 관련

또한 유통센터는 「고발지침」 제3조 제1항에서 대표이사가 범죄사실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여부를 종합하여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조 제2항에서 의무고발 대상을 ▲100만 원(누계금액) 이상 공금을 횡령한 자, ▲횡령금액을 전액 변상하지 않은 자,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고 또다시 공금을 횡령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내용 등을 명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유통센터는 ①징계처분 관련 승진제한은 2022년 단체협약을 통해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협상 난항으로 개정을 완결짓지는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②징계처분 관련 포상제한은 일반적으로 포상심의 시 징계현황을 감안하여 포상심의하고 있으나, 명문화할 수 있도록 노조협조여부 등 검토하여 추진·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③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근거는 현 규정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

유통센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행위 등의 징계규정은 있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문화할 수 있도록 노조협조여부 등 검토하여 추진·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④중징계 처분 직원 등에 대해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의 관련 조항은 기 노조와 개정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개정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개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⑤임용(채용)결격사유에 성범죄 포함과 ⑥징계시효는 보다 엄격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사유와 징계시효를 명문화할 수 있도록 노조협조여부 등 검토하여 추진·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⑦고발지침은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품수수 등의 기준으로 고발을 하고, 엄정히 처리하고 있으나 규정상에는 청탁금지법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임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 및 사후처리 등이 관계 법령과 정부지침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1. 업무 개요

유통센터는 「복무규정」, 「임원복무기준」 등에 따라 임직원의 복무를 관리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직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1일 8시간)를 기준으로 하고 백화점 부문 직원은 영업시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직원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직원의 출근상태 및 근무상황에 대한 확인 및 관리는 각 팀장이 하여야 한다.

「임원복무기준」 제4조에 따르면 임원의 근무시간은 직원의 「복무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유통센터는 현재 사무실을 지문 또는 사원증으로 출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전산을 이용해서 출퇴근 등의 복무를 관리하지 않고 「복무규정」에 따라 각 팀장이 직원의 출근상태, 근무상황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팀장 이상 직급에 대한 복무 관리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시스템을 통해 출퇴근 등 복무를 관리할 수 있음에도 각 팀장에 직원 복무에 대한 관리를 일임

하는 것은 출퇴근 등 복무와 관련한 공직기강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

유통센터 외 증기부 소속 10개 공공기관 중 유통센터와 같이 전산을 이용하지 않고 각 부서장에 복무관리를 일임하는 기관은 전무하다.

【관계기관 의견】

유통센터는 보다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노조협조 여부 등 검토하여 추진·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사옥 출입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출퇴근 등 복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 업무 개요

유통센터는 주요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 부패유발요인 등을 사전에 검토·평가하여 감사의 실효성 확보와 경영합리화를 위해 주요업무 집행, 계약, 예산 관리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업무의 경우 소속 직원들은 계약업무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 유통센터 일상감사시행요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계약 금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방침결정 및 그 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매 건당 1백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 회의비 및 잡비, 기부금 및 기부물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동 시행요령 제5조(일상감사 의뢰) 제1항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관계 서류와 함께 감사에게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계약에 관한 사항 처리 미흡

감사 대상기간(2020.1.1.~ 2022.12.31.) 중 유통센터 소속 부서에서 계약 체결이

되어 집행된 계약 건 중 일상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를 의뢰를 하지 않고 계약처리 절차를 생략한 계약 건이 총 7건이 확인되었다.

나.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처리 미흡

또한, 동 감사 대상기간 중 일상감사를 의뢰·수감 받지 아니하고 건당 1백만원 초과하는 업무추진비, 회의비 및 잡비, 기부금 등을 집행한 내역이 11건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유통센터는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기관 내 규정에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전직원들에게 공지하여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받고 적법성·타당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으나, 직원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해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상감사를 수감 받지 않은 채 계약이 체결되거나 예산을 집행한 건이 일부 발생한 것을 인정하며 앞으로 해당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일상감사 절차를 누락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주의)

1. 업무 개요

유통센터는 「회계규정」, 「예산관리규정」, 「법인카드관리지침」 등에 따라 예산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에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의안번호 제2013-322호)을 의결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 지방자치단체장, 각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 등에게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기획재정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84쪽)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지급대장에 지급일시, 지급대상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유통센터 내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상품권 구입 및 사용과 관련된 지침은 센터운영활동비 집행요령 제5조(사용) 4항에 일부 명시되어있으나, 업무추진비에만 한정된 규정으로 기타 비용계정(관촉비, 포상비 등) 항목 등은 반영하고 있지 않았고, 권익위 권고 사항이 내부 규정 및 상품권 구입 절차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감사대상 기간(2020년~2022년) 유통센터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152건의 상품권 구입 내역이 확인되었는데, 77건이 상품권의 실제 사용내역 확인이

불가능했다.

【관계기관 의견】

유통센터는 상품권을 구매 후 지급대장 관리(사용내역 증빙)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며, 향후 상품권 구입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급대장(사용내역 증빙)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상품권 구입 및 사용과 관련된 관리 규정을 제정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 업무 개요

유통센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과 비대면 활성화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평가 시스템 구축사업을 2020년 12월에 진행하였다.

판로지원 수혜 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은 유통센터 각 사업부서별로 모집을 하고 있으며, 평가위원 모집 시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수집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위원의 자문 평가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하고 있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²⁹⁾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유통센터 비대면 평가관리 시스템(estm.sbdc.or.kr)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평

29)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가위원은 비대면 평가관리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한다.

평가위원의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에 따라 ‘자문 평가수당 지급’을 목적으로만 수집한 것으로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나, 유통센터는 웹사이트 로그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평가관리 시스템 관리자는 관리화면에서 평가위원의 평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관리화면에 보이는 주민등록번호는 뒷 6자리가 비식별화 처리가 되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없게 보안조치가 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페이지 소스 보기” 옵션을 클릭하면 주민등록번호의 전체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취약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관계기관 의견】

유통센터는 비대면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 시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입력 방식으로 설계 하였으나, 테스트 및 검증 과정에서 원격지 평가 진행에 대한 평가위원 본인확인을 위하여 사전에 동의 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처리를 변경하였다고 하며,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알게 된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관리자 화면 주민등록번호 노출 등의 문제에 대해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 업무 개요

MRO 시스템은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시스템으로 중소벤처기업 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유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유통센터 내부지침 「내부 정보보안 지침」 제77조(비밀번호 관리) 제1항에 따르면 개별사용자 및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각종 비밀번호를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사용하여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MRO 시스템(cms.sbmro.or.kr)은 인터넷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마스터(슈퍼 관리자) 계정은 총 4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스터 계정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한 결과 마스터 계정 4개의 패스워드가

모두 '1234'로 취약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스터 계정으로 로그인 하면 중소납품기업 정보 및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납품기업에 대한 사이트 관리 및 각 종 코드 설정을 할 수 있었다.

해당 패스워드 취약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관리실 담당자 및 용역 상주인력 등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었으나, 개선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마스터 계정 로그인 로그를 확인한 결과 하나의 계정을 여러사람이 돌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내부 IP가 아닌 공용 IP로도 로그인한 정황을 파악하였으나, 시스템 운영 담당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유통센터는 정보화 인력의 잦은 이직 및 퇴사로 내부 관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용량이 많지 않은 MRO시스템에 대하여 정기적인 계정관리를 잘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업무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앞으로 MRO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IV. 처분 요약

1. 처분요구사항(총괄) : 주의·경고 40건(개인 37, 기관 3), 시정 3건, 개선요구 5건, 통보 11건

구분	건명	관계기관	처분요구		조치 기한	감사자
			기관	개인		
1	정부보조사업 인건비 집행 부적정	중소기업 유통센터	시정요구 개선요구 경고	-	'23.9월	
2	홈쇼핑 지원사업 리스크 관리 부실	"	개선요구 주의	주의(2)	'23.9월	
3	홈쇼핑사업 선급금 지연이자 회수 누락 및 과오 청구	"	개선요구 시정요구	주의(5)	'23.9월	
4	인천공항면세점 업체 입점 등 부당 추진	"	-	주의(2) 경고(1)	'23.9월	
5	정부보조사업 예산 집행 부적정	"	통보	주의(2)	'23.9월	
6	행복한백화점 입점 방식 등 운영 부적정	"	개선요구 시정요구	-	'23.9월	
7	정·현원 관리 부적정	"	통보	-	'23.9월	
7.1	법령상 의무고용 준수 미흡	"	통보	-	'23.9월	
7.2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미흡	"	통보	-	'23.9월	
8	복리후생제도 운영 부적정 및 감사 지적사항 이행 미흡	"	주의 통보	-	'23.9월	
9	계약관리 미흡	"	통보	주의(14)	'23.9월	
10	행복한백화점 상품권 발행 및 관리 개선 필요	"	통보	-	'23.9월	
11	징계 관련 내부규정 정비 필요	"	개선요구	-	'23.9월	
12	임직원 복무관리 개선 필요	"	통보	-	'23.9월	
13	일상감사 미 실시 등 내부통제 미흡	"	-	주의(10)	'23.9월	
14	상품권 구입 및 사용 관리 미흡	"	통보	-	'23.9월	
15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 미흡	"	통보	-	'23.9월	
16	MRO 시스템 관리자 계정 관리 미흡	"	통보	-	'23.9월	

2. 개인 처분 명세 : 경고 1명, 주의 36명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처분계획			지적내용
				주의	경고	징계	
1			☎☎☎	○			홈쇼핑 지원사업 리스크 관리 부실
2			☆☎☎	○			홈쇼핑 지원사업 리스크 관리 부실
3			☎☎b	○			홈쇼핑 지원사업 선급금 지연이자 관리 소홀
4			▼\$※	○			홈쇼핑 지원사업 선급금 지연이자 관리 소홀
5			☎♣♣	○			홈쇼핑 지원사업 선급금 지연이자 관리 소홀
6			☎☎★	○			홈쇼핑 지원사업 선급금 지연이자 관리 소홀
7			☎☎♣	○			홈쇼핑 지원사업 선급금 지연이자 관리 소홀
8			☎☎☎	○			인천공항면세점 업체 입점 관련 검토 소홀
9			☎☎☎	○			인천공항면세점 업체 입점 관련 검토 소홀
10			☎☎☎		○		인천공항면세점 업체 입점 관련 검토 소홀
11			☎☎☎	○			정부보조사업 예산 집행 부적정
12			☎☎☎	○			정부보조사업 예산 집행 부적정
13			☎☎☎	○			계약관리 미흡
14			☎☎☎	○			계약관리 미흡
15			☎☎☎	○			계약관리 미흡
16			☎☎☎	○			계약관리 미흡
17			☎☎☎	○			계약관리 미흡
18			☎☎☎	○			계약관리 미흡
19			☎☎☎	○			계약관리 미흡
20			☎☎☎	○			계약관리 미흡
21			☎☎☎	○			계약관리 미흡
22			☎☎☎	○			계약관리 미흡
23			☎☎☎	○			계약관리 미흡
24			☎☎☎	○			계약관리 미흡
25			☎☎☎	○			계약관리 미흡
26			☎☎☎	○			계약관리 미흡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처분계획			지적내용
				주의	경고	징계	
27				○			일상감사 누락
28				○			일상감사 누락
29				○			일상감사 누락
30				○			일상감사 누락
31				○			일상감사 누락
32				○			일상감사 누락
33				○			일상감사 누락
34				○			일상감사 누락
35				○			일상감사 누락
36				○			일상감사 누락